

[별표 1의2] <신설 2005.9.30>

임산물 채취 대상지역·허용기준(제6조제4항관련)

1. 대상지역

2001년 국립공원 용도지구 조정에 의하여 자연환경지구에서 자연보존지구로 변경된 지역중 거주민이 자연보존지구로 변경되기 이전부터 임산물을 채취하여 온 지역으로 채취 대상지역 및 면적은 아래와 같다.

구 분	대 상 지 역	면적(km ²)
지리산국립공원 심원지구	전남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 산110-2번지 내	0.29
지리산국립공원 달궁지구	전북 남원시 산내면 덕동리 산215-16번지 내	0.23
내장산국립공원 남창지구	전남 장성군 북하면 신성리 산25번지 내	0.20

2. 허용기준

가. 채취가 허용되는 임산물의 종류는 고로쇠 수액에 한한다.

나. 채취할 수 있는 자는 2001년 자연환경지구에서 자연보존지구로 변경되기 이전부터 고로쇠 수액을 채취하여 온 거주민으로 한다.